

# 「2026년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사업 2차 통합 모집공고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전주시에 소재한 금속가공 제조업(\*업종코드 C25)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제품 마케팅, 현장 인프라 개선(제조공정)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

##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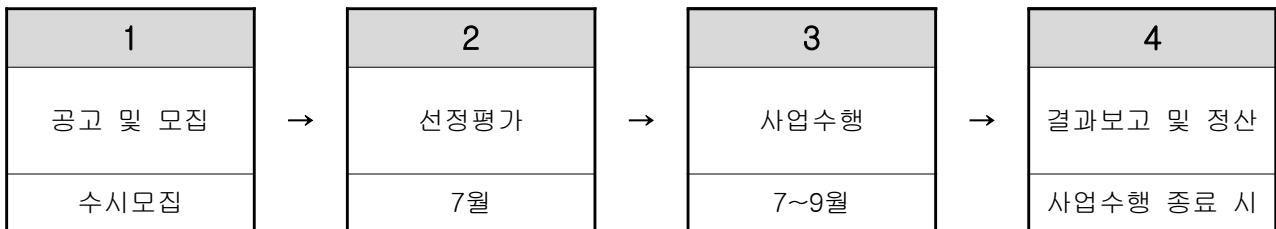
- 사업명 : 2026년 지역소공인육성 사업(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목적
  - 소공인 기업의 인프라, 초기 단계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공정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시제품 고도화 및 마케팅, 인증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출시 및 매출 창출 연계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
- 지원규모 : 5개 사업 총 28개 사
  - 기업당 연 최대 700만 원 한도 지원 가능
  - 사업수행 지원금 외 컨설팅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총 640만 원 한도)
- 지원사업(\* 아래 표 참조)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규모	비고
1	소공인 기술역량강화 교육사업	2026. 04 ~ 09.	기술역량강화 집체교육 1회(5명)	
			도제식 교육 8회(2명)	
2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6. 04 ~ 09.	수혜기업 1:1 수요맞춤 컨설팅 5개 사	
3	소공인 제조공정 혁신 지원	2026. 04 ~ 09.	수혜기업 9개 사 지원	
4	소공인 사업경쟁력 강화지원	2026. 04 ~ 09.	수혜기업 5개 사 지원	
5	소공인 현장 안전진단 지원	2026. 04 ~ 09.	안전진단 컨설팅 2개 사	

\* 협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운영기관의 일정 및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I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 □ 추진절차



### □ 신청방법

○ 신청기간(\*상시모집, 월 단위 선정평가 진행)

회차	일정	비고
1차	26년 4월 13일 ~ 5월 20일 18:00까지	5월 선정평가
2차	26년 6월 25일 ~ 7월 10일 18:00까지	7월 선정평가

(※ 선착순 모집으로 정원 충족 시 모집 기간과 무관하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기업소재지 기준)

구분	국고보조금 지원 (22개 사)	전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6개 사)
지원대상	<b>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b> 소공인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24 온라인 신청·접수 ( <a href="https://www.sbiz24.kr/">https://www.sbiz24.kr/</a> )	JVADA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오프라인 신청·접수 ( <a href="http://www.jvada.or.kr/">http://www.jvada.or.kr/</a> )

○ 문의처 :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63-902-1105, 1108)

### III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국비 지원가능 기준 전주시 내 제조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 표준산업분류코드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또는 대표자)
-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IV 제출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지원신청서	1부	• 별도 첨부파일 참조 (제공서식 활용)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별도 첨부파일 참조 (제공서식 활용)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도 제출 <u>必</u>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u>必</u>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5			
6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해당 시)	1부	• 붙임3 (제공서식 활용)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지원신청서내 사업비 집행 계획과 항목 일치 • 참고1(안내사항) 참고

### 8~11번 서류 제출 확인 사항

국비 지원기업	시비 지원기업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u>미동의</u> 시 필수 제출	필수 제출(8~11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제조업 <u>必</u> )
9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u>必</u>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u>必</u>
11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u>없는</u>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u>있는</u>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1부	• 국세청 홈택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마이데이터 동의에도, 조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추후 서류 보완요청 할 수 있음.

## V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처 :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선정기업이 아님)
- 지급조건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최종점검 진행 후 지급

###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선정”
  - 동일한 평가 점수의 경우, 전주시 팔복동 집적지 내 소공인을 우선 선정
    - \* 2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지 내 소공인인 경우 최근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소공인 우선 선정
  - 평가결과 60~70점미만 기업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평가결과 60점미만 기업 “미선정”
    -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 □ 평가기준표

- 평가표(안)

구 분	세부평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문제 해결의 필요성 여부</li> <li>• 사업의 현 시점 추진의 적절성 여부</li> </ul>
목표 명확성,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li> <li>• 자원 및 일정 대비 달성 가능 여부</li> </ul>
지원 내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의 부합 및 구성의 적정성 여부</li> <li>• 예산 편성의 합리성 및 효율성 여부</li> </ul>
사업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 증대 및 절감으로 성과 창출 가능성 여부.</li> <li>•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가능성 여부.</li> </ul>

## V 유의사항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 지원 사업 지침 및 안내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 참고자료

1.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선정업체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2. 동일 항목의 지원사업은 **연속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5년에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에 **선정시 26년에는 제조공정혁신 미선정, 타 사업은 지원 가능**).
3.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원금액 기준은 **“대표자 ”**입니다.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분의 대표님에게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소진공 지침에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대표님이 사업체 A,B,C를 운영하시는 경우, A업체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침 한도 금액 전액 지원을 받으셨다면, B와 C는 더 이상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4. 전주시 내 소재하는 금속가공소공인(C25)만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중복수혜기업이므로 전주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6. 신청서 내 **견적서 관련**
  - 1)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품목이 같아야** 합니다(모델번호, 규격, 투입인력 등).
  - 2) 본 견적의 수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지원사업 수행 종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를 할 경우 본 견적의 수행업체의 종목이 방수공사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에 해당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에 해당 업체의 **종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신청서 상 공란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2

## 제출서류 발급처 (참고자료)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세무서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2	(국세)납세증명서	[콜센터] 국번없이 126
3	지방세납세증명서	[오프라인]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a href="http://www.gov.kr">www.gov.kr</a> ) 또는 위텍스( <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 )
4	표준재무제표증명	[오프라인] 세무서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콜센터] 국번없이 126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7	부가가치세 신고서	
8	사업장현황신고서	
9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a href="http://sminfo.smba.go.kr">http://sminfo.smba.go.kr</a> ) [콜센터] 국번없이 1357
1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 ) [콜센터] 1577-1000
12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13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1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a href="http://www.total.comwel.or.kr">www.total.comwel.or.kr</a> )
15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프라인] 법원등기소 [온라인] 법원 인터넷 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참고3

### 지원업종코드(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부가세가치세신고서상 주업종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업종코드 기재

## 소(상)공인 확인 기준

## ①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sup>①</sup> 중 소상공인<sup>②</su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sup>③</sup>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②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b>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b>,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b>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b>,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종 구분 방법

###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 참고6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매뉴얼(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병역특례업체 신청, 연구전담부서설립, 정부투자기관 계약 체결 및 입찰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에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거나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혹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미리 업로드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b>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b>	<b>신청서 작성</b>
<a href="#">발급절차 안내</a>	★자료제출 후 신청서 작성 가능★ 오프라인 자료제출 기업 제외(직전. 당해 창업, 분할, 합병, 간편장부, 관계기업 보유기업 등) ★ 신청서 작성방법은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처 매뉴얼] 참고 ★
<a href="#">온라인 자료제출</a>	
<a href="#">제출자료 조회</a>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div style="text-align: center;"><p><b>개인 사업자</b></p><a href="#">신청서작성하기</a></div><div style="text-align: center;"><p><b>법인 사업자</b></p><a href="#">신청서작성하기</a></div></div>
<b>신청서 작성</b>	
<a href="#">진행상황 확인</a>	
<a href="#">확인서 출력/수정</a>	
<a href="#">발급안내 문의서</a>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중-선택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각 **사항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동의확인하기



7.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를 **확인 및 체크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도록 함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간편장부대상기업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저장**

해당-기업여부-체크

8.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됨  해당되지 않음

###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기업의 주식소유여부판단기준(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비영리법인은 제외)

최다출자자: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함

### 적용 제외되는 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밖에 '1~4'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전

다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9.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입력  
 [입력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 방법 참고

기준일자: 2021-12-31

선택	구분	기업명/이름	법인번호/생년월일	주식비율	외감대상여부	특수관계자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여부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input type="checkbox"/>								
주식비율합계				100.00	%			

주1) 신청기업의 주주가 사람일 경우 [행추가] 하여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주2) 신청기업의 주주가 다른 국내법인일 경우 [행추가]하여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주3) 신청기업의 주주중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기업의 주주정보]-[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주인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100% 입력해야 함  
 주4) 신청기업의 주식을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진행(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포함)  
 주5)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6%)  
 주6) 주주입력은 최대 20개 까지 가능, 1%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외국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행추가] 하여 [구분]에 [기타]으로 선택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주7)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8)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은 [구분]에 [기타]로 입력하여 주식비율만 기재

+ 행추가
- 행사제
저장

주주현황-입력하기

10.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기준일자: 2021-12-31

선택	기업명/이름	법인등록번호	주식비율(%)	외감대상여부	특수관계자	주주정보입력	출자정보입력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1)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할 것.  
주2) 출자한 기업이 외국법인일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행추가 - 행삭제 저장

###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의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 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반드시 선택하시 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 (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로 표기)

신청기업등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출자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출자-회사정보-입력

11. 상시근로자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상시근로자 현황

---

📅 기준일자: 2021-01-01 ~ 2021-12-31

📝 본점 상시근로자 (단위:명)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연평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0
차감대상	연구진 담요원	1	1	1	1	1	1	1	1	1	1	1	12	1
	임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0
<b>월소계</b>	-1	-1	-1	-1	-1	-1	-1	-1	-1	-1	-1	-1	-12	-1

본점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자동반영 되므로 수기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 모두 반영(입력)된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 바랍니다.

📝 지점 상시근로자 (반드시 지점이 있을 경우에만 입력 바랍니다.) (단위:명)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연평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0
차감대상	임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0
<b>월소계</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0

상시근로자-입력하기

12.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정보

---

신청자성명 *		휴대전화번호 *	▼		
회사전화번호 *	▼				
이메일 *		@			▼

이전
저장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기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서-제출-클릭

13.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결과를 체크하고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문서

### 확인서 출력/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 📅 검색

**📄 조회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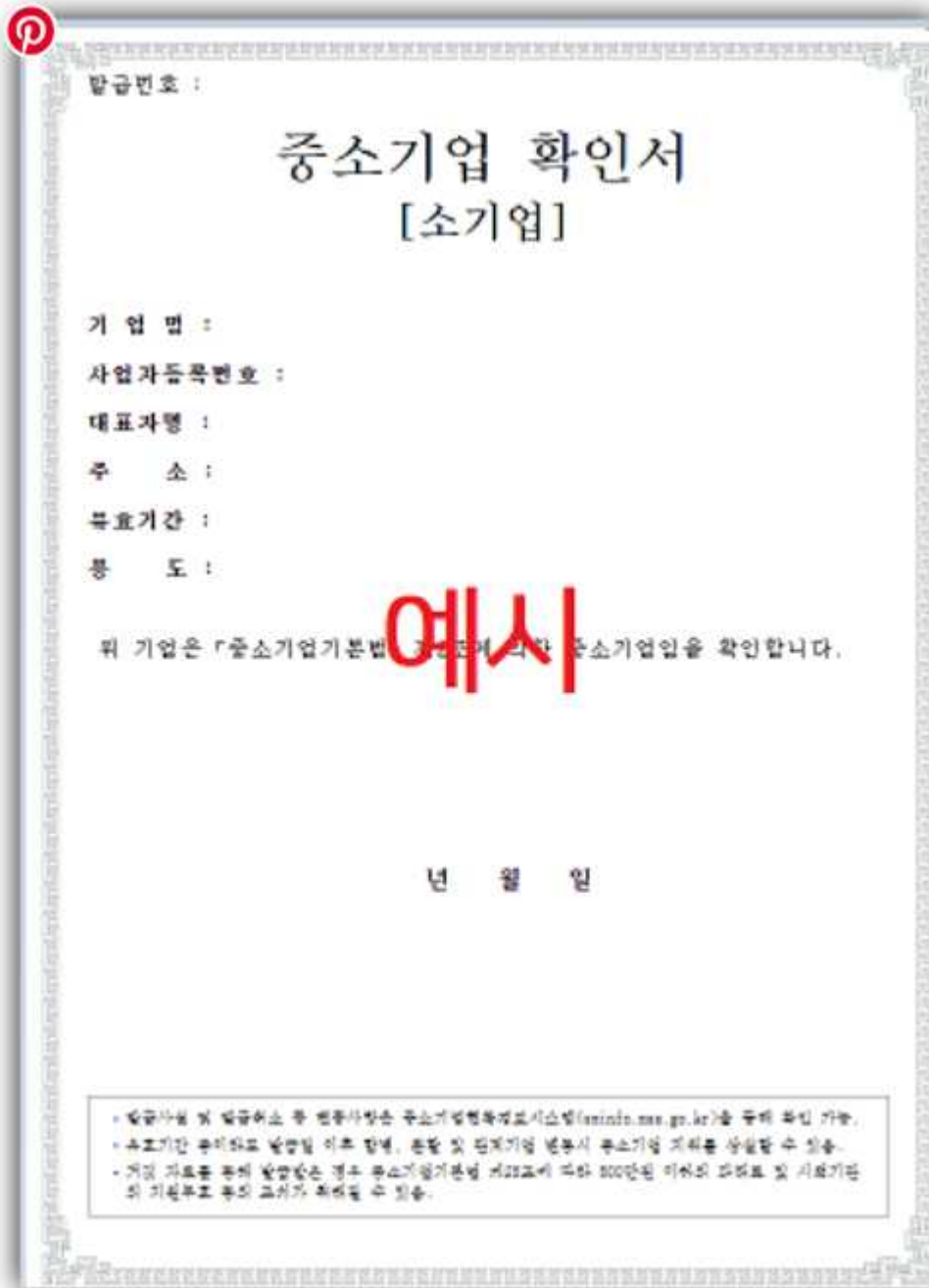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1
⏪
⏩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인합용으로 동도변경

확인서-출력화면

14.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 혹은 저장합니다.



발급번호 :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발급기간 :

종도 :

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급사실 및 발급주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지기간 유지되고 발급일 이후 발행, 존속 및 원적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기업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세표 및 시정기간 외 지원부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중소기업-확인서-예시